

곤자가 국제 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생활수칙

제정 2018.12.26.

개정 2019.02.28.

개정 2019.05.07.

개정 2019.12.03.

개정 2021.12.17.

개정 2023.07.01.

개정 2024.06.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생활수칙은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국제학사”) 일반사실에 거주하는 사생들과 단기거주자들에 대한 학사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의 번역) 생활수칙은 한국어로 작성된 후 학사의 외국어 공지언어로 번역된다. 따라서 외국어로 번역된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입 사

제3조 (입사절차) ① 입사절차는 「곤자가 국제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입사신청, 입사선발, 비용납부, 사실배정(宿舍配定), 입사등록으로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입사절차는 국제 학사 시행세칙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단기거주자의 입사절차는 국제학사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학사장의 판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제4조 (사실배정) ① 국제학사 학사장(이하 “학사장”)은 사생들의 학사생활을 돕기 위해 사실배정

이전에 개인의 생활습관과 룸메이트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학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실배정이 완료된 이후 추가모집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습관과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③ 전체 사생의 규모, 개별 사생의 문화, 언어, 가치관,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사실배정 시 개별 사생의 생활습관과 선호도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

제5조 (입사등록) ① 입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규입사 사생은 정규입사 기간 중 공지된 시간 내에 입사데스크를 방문해야 하고, 지연입사 사생은 학사장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입사데스크를 방문해야 한다.

2. 입사데스크를 방문하여 입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작성하고 사생증(출입증)을 수령한 후 해당 사실로 이동한다.

② 입사등록 시 사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폐결핵 정상소견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개정 2019.12.3>

가) 제출할 진단서의 유효기간: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나) 제출된 진단서의 유효기간: 입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효<개정 2023.07.01.>

2. 입사동의서

3. 별도 동의서 (해당 사생만 제출)

4. 학사장이 공지한 증명서 <개정 2023.07.01.>

③ 입사등록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단서 미제출자는 사생증을 받을 수 없고,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곧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 출입 역시 금지된다.

2. 학사장은 정규입사 기한 이내에 혹은 별도로 승인된 기한 이내에 건강진단서나 입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입사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생의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전에 공지된 입사등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생은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4. 학사장이 공지한 증명서 미제출자는 공지내용에 따라 조치된다. <개정 2023.07.01.>

제6조 (조기입사) 입사업무에 필요한 조교 외에는 조기입사를 할 수 없다.

제7조 (지연입사) ① 원칙적으로 사생은 정규입사기간에 입사해야 한다.

②지연입사를 하려면, 사생은 사전에 공지된 날짜 이내에 학사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사장은 미신청 지연입사자의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④지연입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서강대학교 정규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2. 친인척의 경조사

3. 그 외 학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⑤지연입사 신청과 승인은 다음과 같다.

1. 지연입사 신청은 정규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사생은 신청서와 함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친인척의 사망처럼 발생 날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규입사 날짜까지 지연입사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학사장 승인 후 지연입사자는 학사장이 별도로 정한 날짜와 시간에 입사할 수 있다.

⑥지연입사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연입사자는 입사오리엔테이션 불참에 따른 벌점을 받는다.

2. 미신청 지연입사자는 입사 규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받는다.

3. 입사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지연입사자는 학사장이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별도의 입사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하며, 학사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사생은 이수할 때까지 매일 추가로 벌점이 부과된다. <개정 2023.07.01.>

제 8조 (추가입사) 추가입사자는 입사오리엔테이션 불참에 따른 벌점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별도의 입사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면 벌점이 삭제된다.

제3장 퇴 사

제 9조 (퇴사절차) ① 퇴사절차는 퇴실점검과 보증금수령으로 이루어진다.

②학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퇴사일정이나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사장은 해당 사생의 퇴사를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고, 다음 학기 입사 선발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생의 입사를 취소시킬 수 있다.

제 10조 (퇴실점검) ① 퇴사 시 사실 상태는 입사 시 사실 상태와 동일해야 한다.

② 퇴실점검은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퇴사 당사자와 함께 진행한다.

③ 퇴실점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생은 사전에 퇴사담당조교와 함께 퇴실점검을 수행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

2. 사생은 퇴실점검을 받을 때 조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무단퇴사의 퇴실점검은 다음과 같다.

가) 퇴사 당사자가 직접 퇴실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는 무단퇴사에 해당한다. 청소비 차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퇴실점검 이후 퇴사 당사자의 짐이 사실에 있을 수 없고, 퇴사

당사자가 퇴실점검 이후 사실을 방문하거나 거주할 수 없다. 퇴사 당사자의 짐과 쓰레기가 남겨져 있을 경우 모두 즉시 폐기처리 하며 추가 처리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추가 처리비용은 쓰레기처리비용과 인건비 등이다.

나) 퇴사 당사자가 동일 성별의 국제학사 사생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대리인이 퇴사점검 담당조교와 연락하여 퇴사점검을 받고 퇴사원과 사생증(출입카드)을 담당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망실의 확인은 대리인이 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다) 퇴사 당사자가 동일 성별의 국제학사 사생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퇴사사실을 미리 퇴사점검 담당조교에게 통보한 경우, 퇴사 당사자는 퇴사원과 사생증(출입카드)을 보안직원에게 맡기고 퇴사할 수 있다. 퇴사점검 담당조교는 보안직원에게 퇴사원과 사생증(출입카드)를 전달받아 퇴사점검을 할 수 있다. 손망실의 확인은 사진으로 퇴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이의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라) 퇴사 당사자가 동일 성별의 국제학사 사생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퇴사사실을 미리 퇴사점검 담당조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경우, 퇴사점검 담당조교는 사감과 상의하여 퇴사점검을 한다. 사감은 이후 처리사항을 무단퇴사한 사생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학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07.01.>

④ 퇴실점검을 완료한 사생은 사감실에 사생증(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1조 (보증금수령) 보증금 수령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12조 (중도퇴사 신청) ① 정규입사 이후 '중도퇴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는 퇴사를 중도퇴사라 한다.

② 중도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중도퇴사 가능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도퇴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란, 퇴사 시 기숙사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중도퇴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은 매학기 변동 가능하며, 대개 정규퇴사 시작일 30일 이전의 평일로 설정된다. 중도퇴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은 매학기 시작 이후에 공지된다. <개정 2024.06.01.>

제 13조 (조기퇴사 신청) ① 중도퇴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 이후부터 정규퇴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퇴사를 조기퇴사라 한다.

② 조기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조기퇴사를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학사장은 조기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생에게 벌점부여, 다음 학기 입사취소, 추후 입사선발 불이익 부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지연퇴사 신청) ① 정규퇴사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퇴사를 지연퇴사라 한다. 퇴사업무에 필요한 조교는 지연퇴사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연퇴사 신청 사생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연퇴사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다음 학기 거주 사생들을 위한 방배정이 끝난 이후에 결정되며, 국제학사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생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2. 방배정은 지연퇴사 신청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지연퇴사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추가 거주를 위하여 사실 이동을 해야 할 수 있다.
3. 사생은 지연퇴사에 따른 추가 거주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으로 변경 <변경 2023.07.01.>

③ 학사장은 무단지연퇴사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사장은 미신청 지연퇴사자의 추후 입사를 금지할 수 있다.
2. 학사장은 사전 승인없이 퇴사시간 이후까지 방치된 물건은 임의로 수집, 보관, 폐기할 수 있으며, 수집, 보관된 물건 중 폐기 전인 물건을 주인임을 증명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사실청소비, 수거포장비, 보관비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23.07.01.>

제 15조 (학사장에 의한 중도퇴사) 학사장은 전체 사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특정 사생을 중도퇴사 시킬 수 있다.

1. 학사 생활 도중에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 학사장과 서강대학교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 혹은 자해의 위험이 있는 사생이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예: 상담거부, 치료거부 등) 자살 혹은 자해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아서 주변 사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추가방역사유(감염병 발생, 빈대 발생 등)가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의 추가방역조치와 학사장의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사생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장 기숙사 비용

제 16조 (기숙사 비용) 기숙사 비용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장 환불 및 배상정책

제17조 (환불정책) 기숙사 비용에 대한 환불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8조 (배상정책) 배상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장 학사일정

제19조 (학사일정) ① 사생은 입사오리엔테이션, 재난대피훈련, 층별간담회, 사실점검에 참석해야 한다.

② 사생은 필수 학사일정이 아닌 국제학사의 행사와 프로그램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제20조 (입사오리엔테이션) ① 직전 학기에 곤자가에 거주하지 않았던 신규 입사생은 입사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② 입사오리엔테이션 참석 의무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간에 서강대학교 정규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생 중에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2. 직전 학기에 곤자가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 거주 경험이 있는 사생 중 불참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3. 그 외 학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입사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당일 참석 의무를 면제받은 사생은 1주일 이내에 해당 일정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제21조 (재난대피훈련) ① 사생은 재난대피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② 재난대피훈련 참석 의무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간에 서강대학교 정규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생 중에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외 학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재난대피훈련에 대한 당일 참석 의무를 면제받은 사생은 공지된 기간 내에 재난대피훈련 대체교육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07.01.>

제22조 (층별간담회와 사실점검) ① 사생은 층별간담회와 사실점검에 참석해야 한다.

② 학기 중 실시되는 층별간담회와 사실점검의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춘계학과와 추계학과 : 층별간담회 3회, 사실점검 2회
2. 하계학과와 동계학과 : 층별간담회 1회, 사실점검 1회

③ 층별간담회와 사실점검 참석 의무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간에 서강대학교 정규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생 중에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외 학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④ 층별간담회와 사실점검에 대한 당일 참석 의무를 면제받은 사생은 1주일 이전 혹은 이내에 해당 일정을 별도로 수행해야 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조교와 조정할 수 있다.

제 7장 학사시설 및 공용물품의 이용

제 23조 (이용 원칙) ① 사생은 학사장이 출입을 허가한 학사시설과 사용을 허가한 공용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학사장은 사생이 학사시설과 공용물품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과 물품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③ 사생은 학사시설과 공용물품을 훼손하거나 불결하게 사용하여 타 사생의 이용에 불편을 주어서 안 된다.

제 24조 (학사시설 이용) ① 사생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다음 시설을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1. 식당

2. 체력실

3. 기도실

4. 빨래방

5. 다림질방

6. 곤자가 라운지

7. 각종 다용도실 (청소도구실)

② 학사시설 이용을 위하여 학사장의 서면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01.>

1. 학사장이 지정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023.07.01.>

2. 배타적으로 공간이나 시설을 사용하길 바라거나, 장시간 사용하길 바라거나, 외부인과 함께 사용하길 바라는 경우<2023.07.01.>

제 25조 (공용물품 이용) ① 사생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다음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

1. 각층에 비치된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진공청소기, 청소용구

2. 공용 테이블 및 의자

3. 공용 컴퓨터, TV, DVD 플레이어

4. 공용 토스터

5. 사감실에서 대여하는 물품

② 각층에 비치된 공용물품에 대한 세부 이용 규칙은 각층의 상황을 고려한 후 해당 조교가 정할 수 있다.

③ 공용물품 이용을 위하여 학사장의 서면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07.01.>

1. 학사장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공용물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3.07.01.>

2. 배타적으로 물품을 사용하길 바라거나, 장시간 사용하길 바라거나, 외부인과 함께 사용하길 바라는 경우

3. 공용 TV와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전체 사생들에게 공지를 하는 경우

제 26조 (곤자가 라운지 이용) ① 곤자가 라운지는 전체 사생을 위한 공간이므로 라운지 내에 개인물품(침구류, 개인 소지품 등)을 보관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사전 신청 없이 장시간 공간을 점유하거나, 사전 신청 없이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취침, 과도한 성적 행위 등)를 할 수 없다.

② 곤자가 라운지 내의 물품은 공용물품이므로 사생은 공용물품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27조 (식당 이용) ① 사생은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사생은 식당 영양사의 요청(예: 음식의 반입과 반출 관련 요청 등)에 응해야 한다.

③ 별도의 학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석식 이후에 식당 공간은 사생들의 학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학사장이 결정한다.

④ 별도의 공지 없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중식

2. 토요일 석식

3. 설날(구정)과 추석 당일 식사

4. 곤자가 페스티벌 당일 석식

5. 대정비기간

제 8장 금지물품 및 금지행위

제 28조 (금지물품) ① 학사장은 사생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사실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학사 내부에 특정 물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보관이나 사용이 금지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술
2. 향정신성 의약품(마약 등)
3. 무기(武器)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4. 각종 전열기구(조리기구, 미용기구, 난방기구 등)
5.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물질(양초, 가스, 화약 등)
6. 애완동물
7. 큰 전력이 소모되는 전기제품(냉장고, 전기밥솥 등)
8. 학사장이 전체공지를 통해 보관이나 사용을 금지한 품목 (예: 공유기 등)
9. 총기, 마약 등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는 모든 물품

제 29조 (금지행위) ① 학사장은 사생 공동체의 안전과 건전한 학사생활을 위하여 개인사실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학사 내부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② 금지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음주
2. 흡연
3. 전열기구 혹은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이용한 난방 혹은 조리 행위
4. 타인과의 성행위, 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개정 2023.07.01.>
5. 주변 사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 소란 혹은 난동
6. 도박, 마약투여 등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
7.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행위 <개정 2023.07.01.>

제9장 출입규정

제 30조 (거주공간에 대한 출입) ①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로부터 허가를 받은 직원, 조교, 사생을 제외한 이는 다른 성별의 사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출입할 수 없다.

②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다.

③ 출입허가를 받은 친인척과 외부인은 정해진 시간 이내에 곤자가 게이트 바깥으로 나와야한다.

④ 입퇴사 당일에는 학사 내부 공간에 친인척과 외부인의 방문이 승인되지 않는다.

⑤ 사생증(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때 관리업체 직원(보안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생은 사생증의 '분실' 혹은 '미소지' 여부에 관한

출입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만취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주취입사자는 사감실 업무시간 이후에 사감과 조교가 사감실에 없다면, 곧자가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다. 단, 동일성별의 사생 혹은 외부인의 도움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사실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생 외 출입자는 출입기록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9.05.07.>

⑦ 외박신청을 하지 않은 사생이 72시간 이상 출입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는 이메일, 전화메시지 등으로 사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제30조의 2 (사실출입 권한) ①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로부터 허가를 받은 직원, 조교는 아래의 경우에 사생의 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사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사생이 재실한 경우라면 입사자는 사실 출입에 협조해야하고 사생의 부재시는 출입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1. 매우 급한 위해(危害) 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출입이 필요한 경우

2.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학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사용이나 금지된 행위가 있다고 여러 증거·증언으로 의심되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재실 중임에도 이유없이 사실 출입에 불응하는 경우

② 조교는 사전에 공지된 정기 사실점검(사실 내 청결상태, 시설·비품 이상유무, 인원 기타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지도 및 사생 애로 청취 등을 위해 실시)과 학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특별 사실점검 때 사실에 출입할 수 있고, 사생은 사실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때 사감 및 조교는 사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실 내 시설점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학사장의 사실 출입 허가를 받은 관리실 및 방역업체 직원 등은 사전 공지 후 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사실은 가급적 사생과 동일한 성별의 직원 및 조교가 출입해야하며, 전 항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을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을 출입할 경우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중 출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 할 수 있다. 부재 중 출입 이후 그 내용을 사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만약 합당한 이유없이 사실출입에 불응할 경우 학사장은 벌점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6.01.]

제31조 (외박) ①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학사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외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② 외박신청은 곤자가 홈페이지 혹은 곤자가 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국제학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사생은 사감실 이메일을 통하여 외박신청이 가능하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이메일을 통한 신청
2. 특별한 사유 없이 외박신청 날짜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

④ 외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외박 가능한 일수와 외박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다.
2. 일 년 중 어느 날이라도 외박하려면, 외박 첫날 23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외박신청이 완료된 이후 당일 자정 이전에 학사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4. 외박 신청을 한 사생이 외박 신청 기간에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 학사 내로 들어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외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5. 외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생은 오전 5시 이전까지 기숙사로 복귀해야 한다. <신설 2019.02.28.>

제32조 (야간통행) ① 학사장은 사생의 야간통행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야간의 잦은 통행에 따른 소음 방지를 위하여 24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하여 1회에 한해 게이트 외부로 나갈 수 있고, 10분 이내에 게이트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개정 2019.02.28.>

③ 곤자가 국제학사 시행 세칙 제52조2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기숙사 내 집단감염 또는 지역 사회로의 전파 방지를 위한 긴급상황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생의 야간통행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외박은 24시 이전에 곤자가 게이트를 통과하여 학사 밖으로 나가서 5시 이후에 곤자가 게이트를 통하여 학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야간 외출은 24시 이후 5시 이전에 곤자가 게이트를 통과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7.01.>

외박신청 여부와 게이트 외출시간		5시 이전에 복귀	5시 이후에 복귀
23시 이전에 신청	24시 이전에 외출	이후 외박신청 자동 취소	외박규정 준수
	24시 이후에 외출	10분 이내, 첫번째 출,입 벌점 면제 두번째부터 출,입 벌점 각각 5점 10분 초과, 출,입 벌점 각각 5점	출만 벌점 5점 입은 벌점 없음
23시 이후에 신청 /	24시 이전에 외출	첫번째 입 벌점 면제	외박 벌점 10점
	24시 이후에 외출	10분 이내, 첫번째 출, 입 벌점 면제	출만 벌점 5점

외박 미신청		두번째부터 출,입 벌점 각각 5점 10분초과, 출,입 벌점 각각 5점	입은 벌점 없음
--------	--	---	----------

제10장 룸메이트 간 분쟁 및 사실변경

제33조 (룸메이트 간 분쟁) ① 룸메이트 간 분쟁이라 함은 룸메이트 간의 생활습관과 선호도의 차이 혹은 특정 사생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불화의 발생과 그에 따른 갈등을 일컫는다.

② 국제학사에 거주하는 사생 개개인의 문화, 언어, 가치관,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룸메이트 간 분쟁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생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1. 학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사용이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사장은 금지 물품을 사용했거나 금지 행위를 한 사생을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2. 학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이나 행위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면, 학사장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상호 노력을 거부하는 사생을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3. 해당 사생들은 일정 기간 상호 노력을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룸메이트 간 분쟁이 심각한 경우, 해당 사생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자발적인 중도퇴사
2. 공실이 발생할 때까지 배정받은 사실에서 거주하며 대기
3. 현 룸메이트 1명과 다른 사실 사생 2명과의 전원 합의 하에 사실 이동

④ 세 가지의 선택에 따른 학사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기 납부한 기숙사비의 환불은 중도퇴사 환불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공실 발생까지 대기하는 경우, 해당 사생은 사감실이나 행정실을 통해 공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감실이나 행정실을 방문해야 할 책임은 해당 사생에게 있다.
3. 사실 이동을 원하는 경우, 사실 이동이 가능한 방을 찾고 사생 간 합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은 해당 사생에게 있으며, 사실 변경은 사감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⑤ 룸메이트 간 분쟁으로 사실(居室) 변경을 요구하는 사생은 기배정된 룸메이트와 일정 기간 (최하 2주 이상) 함께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사장은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사생을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 룸메이트 간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는 기준일(첫날)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생이 사감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날이다.

제34조 (입사 후 사실배정에 대한 불만족) 사실배정에 불만족하여 사실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변경의 원칙과 절차는 ‘룸메이트 간 분쟁’에 따른 사실변경의 원칙과 절차에 준한다.

제 35조 (사실변경 및 룸메이트 변경 금지 사유) 추가방역사유(감염병 발생, 반대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학사장은 관련 사생의 사실변경 및 룸메이트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다수의 사생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사생을 중도퇴사 시킨 후 해당 사실을 폐쇄할 수 있다.

제11장 상벌점 규정

제 36조 (상벌점 조회 및 변경요청) ① 사생은 학사 거주 기간 동안 자신의 상벌점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사생은 자신이 받은 상벌점이 잘못 부여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벌점 수정 요청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벌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제 37조 (고벌점 기준점수) ① 춘계학과와 추계학과 정규 입학 후 약 한 달 동안 다른 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모든 필수 학사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생이 받을 수 있는 벌점은 165점이다. 이 점수를 근거로 춘계학과와 추계학과의 고벌점 기준 점수는 150점으로 한다.

1. 입학동의서 제출 (벌점 20점, 1회 지연 시)
2. 비품확인서 제출 (벌점 10점, 1회 지연 시)
3. 입사오리엔테이션 참석 (벌점 30점, 불참 시)
4. 층별간담회 참석 (벌점 50점, 2회 불참 시)
5. 사실점검 참석 (벌점 25점, 1회 불참 시)
6. 재난대피훈련 참석 (벌점 30점, 불참 시)

② 하계학과와 동계학과 정규 입학 후 약 한 달 동안 다른 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모든 필수 학사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생이 받을 수 있는 벌점은 60점이다. 이 점수를 근거로 하계학과와 동계학과의 고벌점 기준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1. 입학동의서 제출 (벌점 20점, 1회 지연 시)
2. 비품확인서 제출 (벌점 10점, 1회 지연 시)
3. 입사오리엔테이션 참석 (벌점 30점, 불참 시)

제 38조 (고벌점에 따른 징계) ① 학사장은 거주기간 동안 벌점이 고벌점 기준 점수를 초과한 사생을 장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거주기간 동안 벌점이 고벌점 기준 점수보다 50점을 초과한 경우, 학사장은 장학위원회 소집

없이 해당 사생을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 예1: 춘계학기만 거주한 사생이 벌점을 200점 이상 받은 경우

※ 예2: 하계학기만 거주한 사생이 벌점을 100점 이상 받은 경우

※ 예3: 춘계와 하계학기를 연이어 거주한 사생이 벌점을 250점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징계에 해당되는 벌점을 받을 경우, 학사장은 사생에게 소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07.01. 제39조에서 이동>

1. 정한 기한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가) 거주중인 경우 강제퇴사

나) 입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입사취소 중 한 가지 혹은 복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정한 기한 이내에 소명이 있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사안의 심각성, 사생의 의도와 귀책여부, 사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복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강제퇴사

나) 추후 입사금지

다) 입사취소

라) 고별점 부여 후 상점을 받도록 권고

마) 서약서 작성 후 추후 재심의

3. 기타 학사장이 학사 및 사생의 안전을 위해 지시한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 39조 (벌점 사유에 따른 징계 내용) ① 벌점은 규정에 근거하여 학사장이나 학사장이 위임한 자가 부여한다.

② 규정에 없는 벌점은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부득이할 경우 학사장의 승인을 받아 부여하고, 매 학기말에 생활수칙을 개정하여 반영한다.

③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과: 야간출입규정위반, 외박규정위반 등

2. 필수 참석 행사에 미출석: 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사실점검 미참석 등

3. 공동체 생활에 부적절한 행위: 냉장고 사용규정 위반 등

④ 벌점은 상벌대장에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개정 2023.07.01.>

항목	벌점 사유	징계
----	-------	----

<p>중징계 혹은 경징계</p>	<p>입퇴사 규정 위반</p>	<p>1. 입퇴사규정 위반: 총 2회이상 입퇴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후 입사 선발제한 가능 <개정 2023.07.01.></p> <p>2. 입사규정 위반</p> <p>① 연락두절</p> <p>1) 입사취소 및 추후 입사금지</p> <p>② 입사 당일 입사 시간 위반</p> <p>1) 입사 당일 입사 시간 위반: 최대 벌점 20점</p> <p>③ 조기입사</p> <p>1) 사전 승인 없이 조기입사 시도: 입사 취소 가능</p> <p>2) 입사업무상 필요할 경우 총조교, 외국어 조교, 행정조교는 학사장의 사전 승인으로 조기입사 가능.</p> <p>④ 지연입사</p> <p>1) 사전 승인 없이 지연입사 시도: 입사 취소 가능</p> <p>2) 사전 승인을 받은 지연입사: 최대 벌점 50점</p> <p>3. 퇴사규정 위반</p> <p>① 무단퇴사 (무단조기퇴사, 무단지연퇴사)</p> <p>1) 퇴실 검사없이 무단퇴사: 추후 입사금지</p> <p>2) 사전 승인받고 무단조기/지연퇴사: 추후 입사제한</p> <p>② 퇴사 당일 퇴사 시간 위반</p> <p>1) 퇴사 당일 퇴사 시간 위반: 최대 벌점 20점</p> <p>③ 조기퇴사</p> <p>1) 사전 승인 없이 조기퇴사 시도: 추후 입사 선발 제한 가능</p> <p>2) 사전 승인 받고 조기퇴사: 입퇴사 규정 위반(1회)</p> <p>④ 지연퇴사</p> <p>1) 사전 승인 없이 지연퇴사 시도: 추후 입사 선발 제한 가능</p> <p>2) 사전 승인 받고 지연퇴사: 최대 벌점 50점</p> <p>3) 입사업무에 필요할 경우 총조교, 외국어조교, 행정조교는 학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연퇴사 가능</p> <p>⑤ 중도퇴사</p> <p>1) 사전 승인 없이 중도퇴사 시도: 영구입사금지</p> <p>※ 심각한 퇴사규정 위반자가 발생한 경우, 학사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학생이 소속된 기관의 책임자 혹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대표에게 해당 사생의 규정 위반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다.</p>
---------------------------	------------------	---

출입금지	입사 시 건강진단서 미제출	벌점은 없으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때까지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트) 출입 불가
중징계	창문 밖으로 쓰레기나 기타 물건을 투기	최대 100점/회 ※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는 중징계
	개인정보 허위 기재 및 중요정보 누락	1. 개인정보 허위 기재: 최대 100점 2. 중요정보 누락(혹은 불성실 입력): 최대 50점 ※ 입사 시 혹은 거주 중에도 개인정보허위 기재 혹은 중요정보(연락처 등) 누락 혹은 불성실 입력은 기숙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입사거부 혹은 강제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
	사감실을 통한 각종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최대 100점/회
	학사시설 및 공용물품을 파손하거나 고장을 일으킨 자	1. 의도적 파손이나 고장인 경우 ① 벌점 100점/회 부과 ② 수리비용 납부 ※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성, 사생의 의도, 타사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여 중징계 조치 가능 2. 사용 미숙의 사유로 인한 비의도적 파손이나 고장인 경우 ① 사감실이나 담당 조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 벌점 20점 이하 ② 자발적 신고 없이 CCTV로 확인: 벌점 50점/회 ③ 수리비용 납부
경징계	학사시설 및 공용물품 이용 규칙을 어긴 자	최대 50점/회 ※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성, 사생의 의도, 타사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여 중징계 조치 가능
	학사주변, 로비, 사실에서의 소음, 소란, 고성방가	최대 50점/회 ※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중징계 조치 가능
	공용 컴퓨터의 불건전한 사용	최대 50점/회 예: 음란물 시청, 불법다운로드
	무단 광고물 게시 및 배포	최대 50점/회, 무단 게시물 철거
	개인물품 보관을 할 수 없는 곳에 개인물품이나 쓰레기를 보관(방치 포함)한 자	최대 50점/회
	장기간 우편과 소포를 방치(미수령 포함)한 자	최대 50점/회

규정에 근거한 조교의 정당한 지시 불응	최대 50점/회 ※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중징계 조치 가능
입사오리엔테이션 불참	30점
재난대피훈련 불참	30점
가족실 예약 취소일 규정 위반	최대 25점/회
총별간담회 불참	25점/회 <기존 부과조항 삭제 2019.12.03.> ※ 춘계학과와 추계학기의 경우, 해당 학기에 진행된 총별간담회에 모두 불참 시, 추후 입사금지
사실점검 불참	25점/회 <기존 부과조항 삭제 2019.12.03.> ※ 춘계학과와 추계학기의 경우, 해당 학기에 진행된 사실점검에 모두 불참 시, 추후 입사금지
사실 재점검 미 실시	10점/회 <신설 2019.12.03.>
만취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한 경우	최대 50점/회 ※ 총 2회 반복 시 중징계 조치 가능 <개정 2019.05.07.>
입사동의서 지연제출	<삭제 2019.12.03.>
비품확인서 지연제출	10점×(지연횟수)/회 <개정 2019.12.03.> ※ 총 3회의 제출 마감일 이후엔 중징계 조치 가능
사실규약서 지연제출	10점×(지연횟수)/회 <신설 2019.12.03.> ※ 총 3회의 제출 마감일 이후엔 중징계 조치 가능
SNS 대화그룹 지연가입	10점×(지연횟수)/회 <신설 2019.12.03.> ※ 총 3회 지연 이후엔 중징계 조치 가능
무단외박	10점/회 ※ 회수는 외박신청없이 05시 이전에 복귀하지 않은 일 수.<개정 2023.07.01.>
사실점검 시 악취나 청결불량	최대 10점/회 ※ 룸메이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 가능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최대 10점/회 ※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중징계 조치 가능
종량제 봉투 미사용	최대 10점/회 ※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중징계 조치 가능
야간 통행규정 위반	5점/회

사생증(출입증) 미소지상태로 곤자가 게이트(스피드게이 트) 출입	1회 발생 시, 벌점 없음 2회 이상 시, 직전 미소지 출입일 이후 2주 이내에 미소지 출입이 다시 발생하면, 벌점 5점/회 ※ 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카드 미소지로 인한 벌점 삭제
룸메이트의 공간에 물건을 두거나 청소가 불량하여 새로 입사한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최대 50점/회 <신설 2019.12.03.> ※ 반복 시 중징계 조치 가능

제40조 (상점 사유) ① 상점은 규정에 근거하여 학사장과 학사장이 위임한 자가 부여한다.

② 규정에 없는 상점은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학사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매 학기말에 생활수칙을 개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1.>

상점 사유	상점
1. 국제단체나 기관,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내외 대학의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대한민국, 서강대학교, 혹은 곤자가 국제학사의 위상을 높인 자 2.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한 자 ※ 해당 상점은 사감실 건의 후 학사장 승인 이후 부여 가능	100점~10점
1. 곤자가 사생(들)을 위해 봉사한 자 (사감실에서 모집한 도우미 활동 포함) ① 냉장고청소 ② 자가격리자 도우미 <개정 2023.07.01.> 2. 사생(들)을 위해 번역이나 통역 봉사를 한 자 3. 곤자가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비판과 건의를 서면으로 사감실에 제출한 자 (한 학기에 1회로 제한) ※ 해당 상점은 사감실 승인 이후 부여 가능	50점/회~5점/회
1. 상점이 부여된다고 공지된 곤자가 일정, 프로그램, 공모전 등에 참여한 자 ① 입사오리엔테이션 참석 ② 층별간담회 참석 ③ 사실점검 참석 ④ 재난대피훈련참석 ⑤ 설문조사 참여 <개정 2023.07.01.> 2. 곤자가 규정위반자를 신고하여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25점/회~5점/회

	<p>위임받은 이가 곤자가 공동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p> <p>3. 타 사생이 유실한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습득물을 제출한 자</p> <p>① 기타 선행 행위: 분실물 습득 <개정 2023.07.01.></p> <p>4. 조교가 상점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한 자 (예: 사실청소 우수자)</p> <p>① 사실 청소상태 우수 <개정 2023.07.01.></p> <p>※ 해당 상점은 사감실 승인 이후 부여 가능</p>	
--	--	--

제 12장 배려규정

제 41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관한 배려규정) <개정 2023.07.01.>

<p>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곤자가 국제학사의 사생선발 및 퇴사조치 관련 배려규정</p> <p style="margin-top: 100px;">작성일 : 2023년 06월 01일</p>
<p>2017년 11월 24일에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곤자가) 학사장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전) 원장 사이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배려규정’이 작성되었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8년 2월 14일에 다시 기술했다. 2023년 6월 1에는 법전원 전용공간에 설치에 따라 배려 규정 일부를 변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전원 전용층) 곤자가 학사장은 법전원 전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전원 전용공간에 대한 어떠한 배타적 권리를 법전원에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학사의 필요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2 (우선 선발권) 곤자가 학사장은 법전원 학생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선발 규모는 학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전원 정원의 10%를 넘지 않는다. 곤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 조치된 법전원 사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곤자가 학사장은 법전원 사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배려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실 배정) 법전원 학생은 법전원 전용공간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법전원

전용공간에 배정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법전원 사생끼리 같은 방에 배정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전원장의 서면요청서를 입사원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혹은 곤자가의 사정으로 법전원 사생끼리 같은 방에 배정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하지 않는다.

B. (통금과 무단 외박 벌점) 법전원 사생에게도 '통금과 무단 외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그러나 '통금과 무단 외박에 따른' 누적 고벌점으로 강제퇴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C. (층별 간담회와 사실점검) 층별 간담회나 사실 점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법전원 사생들은 해당 층 조교와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간담회나 사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층 조교가 가능한 시간에 개별적으로 간담회나 사실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전원 사생에게 있다. 층별 간담회나 사실 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추후 개별적으로 간담회나 사실 점검을 진행하면 과거에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D. (입사 오리엔테이션) 법전원 사생이 과거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면, 재입사 시 오리엔테이션 참석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본인이 오리엔테이션 참석 의무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4 (벌점에 따른 조치) 3항의 B (통금과 무단 외박 벌점) 이외의 사안으로 벌점이 누적되거나 심각한 규정위반이 발생하면, 학사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전원 사생에게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1: 지속적으로 층별 간담회에 불참하거나 사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해당 법전원 사생을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예 2: 학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퇴사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법전원 사생을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예 3: 학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입사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5 법전원 사생들에게도 일반 사생들과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6 모든 법전원 사생은 입사 시 배려규정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사 당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사자격이 취소된다.

본인 ()는 곤자가와 법전원이 합의한 배려규정을 확인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일시: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학번:)

다소니 학생에 대한 곤자가 국제학사의
사생선발, 입퇴사 및 규정준수 관련 배려규정

작성일 : 2023년 6월 1일

2018년 10월 22일에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곤자가) 학사장과 서강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이하,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과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곤자가는 다소니 학생을 위한 배려규정을 도입한다. 도입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곤자가 학사장은 다소니 학생들과 다소니 도우미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선발 규모는 학사 사정, 특히 다소니 학생들이 거주 가능한 사실의 개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2 학사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책임자에게 다소니 학생들의 선발, 학사생활 및 입퇴사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책임자 역시 학사장에게 다소니 학생들의 곤자가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3 다소니 학생이 거주할 사실은 곤자가 내에 준비된 다소니 전용 사실로 하며, 1명의 다소니 학생이 1명의 다소니 도우미(이하, 도우미)와 함께 동일한 공간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다소니 학생과 함께 거주할 도우미는 곤자가 입사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한다.
 - A. 다소니 학생이 다소니 전용 사실을 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일반 사실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학사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B. 다소니 학생이 1명 이상의 곤자가 거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학사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C. 다소니 학생이 도우미 학생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학사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1명의 다소니 학생이 1명 이상의 도우미, 혹은 0명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 D. 다소니 학생은 필요하다면 곤자가에 함께 거주하는 도우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봉사자는 곤자가 사생, 서강대학교 학생, 혹은 외부 일반인이며, 다소니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봉사자로 선정해달라고 학사장에게 요청하고 학사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E. 학사장은 다른 봉사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여 방문활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다른 봉사자들은 승인받은 활동 시간 외에는 사실에 머물 수 없다. 활동 시간 외에 사실에 머물거나 국제학사내 다른 공간을 출입하는 경우 출입권한을 박탈할 수도 있다.
- 4 모든 도우미와 다른 봉사자들은 '다소니 학생 도우미 곤자가 국제학사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청서에 도우미 개인의 정보와 활동(방문) 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곤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곤자가 공동체의 선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우미 활동(방문) 시간에 제한은 없다.

A. 학사장은 곤자가에 거주하는 모든 다소니 학생들이 도우미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학사장은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도우미의 곤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다소니 학생도 입사선발 이후 건강진단서(폐결핵 정상 소견 포함)를 제출해야 입사할 수 있다. 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다면 해당 진단서를 제출한 후 입사할 수 있고, 입사 이후 추가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다소니 학생도 곤자가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강제퇴사 혹은 추후 입사금지 조치될 수 있다. 단, 입사 초기에 다소니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감실의 개별 면담 자료를 토대로 학사장은 해당 다소니 학생이 준수하기 힘든 규정이나 필수 기숙사 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도움이나 관면을 줄 수 있다.

7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는 다소니 학생들에게 배려규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43조 (국제팀 소속 학생에 관한 배려규정)

국제처 소속 국제 학생에 대한 곤자가 국제 학사의 사생선발, 입퇴사 및 규정준수 관련 배려규정

작성일 : 2018년 10월 29일 (월)

2018년 10월 29일에 서강대 곤자가 국제 학사(이하, 곤자가) 학사장과 서강대 국제처 처장과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곤자가는 국제처 소속의 국제 학생들(교환학생 및 정부초청/이사장 초청 장학생)을 위한 배려규정을 도입한다. 도입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처 처장의 요청에 따라 곤자가 학사장은 국제 학생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선발규모는 학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곤자가 학사장은 국내에 별도 거소가 없는 국제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곤자가 일반 사생들과 달리 다음 다섯 가지의 내용을 배려한다.

- A. 학사장은 국제처 소속의 국제학생들(교환학생 및 정부초청/이사장초청 장학생)도 일반 사생과 동일하게 입사 때 학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을 입사일 기준 한 달 이내로 한다. <학사장과 국제처장의 협의를 토대로 개정 2019.12.03>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건강진단서의 경우에는 국제팀 담당자의 확인 후 제출을 허용한다. 단, 혼자가에 한 학기 이상 거주하는 국제학생은 입사 후 사감실의 공지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학사장은 국제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편 일정의 가변성(항공편 연착 등)을 감안하여, 국제학생들을 위한 춘계학기 및 추계학기 정규입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락 없이 정규입사기간 이내에 입사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국제학생의 입사는 취소될 수 있다.
- C. 학사장은 대정비가 이루어지는 학기(하계 및 동계 학기)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이 대정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사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생들이 대정비기간 동안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학사 내에 마련할 수 있다. 단, 대정비가 진행되는 학기에 기숙사 거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제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배려가 제공되지 않는다.
- D. 국제학생들의 기숙사비 납부는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 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법(예: 국제송금서비스)과 별도의 납부기간이 허용될 수 있다.
- E. 학사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국제학생 관련 사안에 대하여 국제팀 직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특정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국제팀 직원을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장 조교 수칙

제 44조 (선발과 혜택) ① 조교의 선발과 혜택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행정조교를 제외한 모든 조교(총조교, 외국어 담당조교, 관리조교)는 활동기간 동안 국제학사에 거주해야 한다.

③ 개별 조교의 활동 내용에 따라 혜택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집 선발과정에서 공지되어야 하고, 조교 활동을 중단하기 이전에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학사장과 개별조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활동 도중에 혜택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 45조 (권한) ① 조교는 사감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토대로 사감실 업무를 보조하고, 조교 활동과 관련하여 사생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② 조교는 국제학사를 위해 봉사한 사생을 위해 상점 부여를 건의할 수 있고, 조교활동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혹은 규정을 어긴 사생에 대한 벌점 부여나 징계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6조 (준수사항) ① 조교는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곤자가 조교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② 조교로서의 필수적인 활동 내용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교는 학사장의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7조 (활동중단) ① 조교는 활동중단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단, 활동중단을 앞두고 최소 1개월 이전에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② 학사장은 사감실의 의견을 토대로 조교활동의 필수내용, 업무시간,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는 조교의 활동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4장 단체 활동 수칙

제 48조 (사생 단체) ① (선발과 혜택) 사생단체의 선발과 혜택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권리) 곤자가의 지원을 받는 사생단체는 학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단체의 대표들은 곤자가 커뮤니티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곤자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생단체는 곤자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학사장에 의한 단체의 활동 중단 요구를 받지 않는다.

③ (준수사항) 곤자가의 지원을 받는 사생단체는 단체의 고유한 활동목표와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 곤자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생단체는 자발적인 활동 목표와 내용을 자유로이 유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④ (활동 결과에 대한 권리) 학사장은 곤자가의 지원을 받는 사생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아이디어(예: 프로그램 스케줄)와 결과물(예: 단체티 디자인)에 대한 법적권리를 갖는다.

⑤ (활동중단) 학사장은 곤자가의 지원을 받는 사생단체가 단체의 고유한 활동 목표와 내용을 유지하지 않거나 곤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관련 사생들을 징계할 수 있다.

제 49조 (사생회) ① (구성 원칙) 국제학사 사생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9.12.03.>

1. 서강대학교의 타 기숙사 사생회 구성 원칙과 원칙적인 동등함을 유지한다.
2. 학사 거주환경 및 사생 구성원의 국적과 소속의 다양성 등 국제학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② (활동 내용) 국제학사 사생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사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한 활동
2. 사생들의 학사 내 학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
3. 국제학사가 국제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
4. 학사 내 소그룹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그 외 학사장의 승인 하에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근거한 활동

③ (출마자격) 사생회 출마자격 및 팀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국제학사에 춘계 또는 추계학기를 기준으로 연속 2학기 이상 거주한 자로서, 사생회 선거가 있는 해당 학기 초부터 학사생활을 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9.12.03.>

2. 사생회 출마를 위해서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입후보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3. 입후보 팀은 곤자가 사생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협력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4. 곤자가 상벌점 규정에 따라 해당 학기에 곤자가 장학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가 논의 중인 사생은 사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선거일정 및 방법) 사생회 선거는 다음처럼 진행된다.

1. 학사장은 학사 사정을 고려하여 춘계 또는 추계학기에 사생회 선거일정(후보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기간)을 결정한 후 공지한다.

2. 입후보 팀은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사감실에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서류에는 입후보자들과 협력자들에 관한 정보, 출마 목적,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5~10인 사이로 구성하고 선거개표 완료 시까지 운영한다. <개정 2019.12.03.>

⑤ (투개표 진행 및 선출) 투개표는 다음처럼 진행된다.

1. 사생회 선거는 전체 사생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로 한다.

2. 전체 사생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표 중 최고 득표한 입후보 팀이 선출된다. 입후보 팀이 1개인 경우, 유효표 중 50%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면 선출된다. <개정 2019.12.03.>

⑥ (사생회가 받는 혜택) 사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사생회 대표들의 임기는 최대 1년이며, 학사장은 사생회 대표들에게 임기 중 우선발권을 부여한다.

2. 학사장은 사생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지원 내용과 범위는 학사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학사장에게 제출된 사생회의 지출내역은 매학기 전체 사생에게 공개될 수 있다.

⑦ (사생회의 권리 및 의무) 사생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생회의 활동은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생회의 대표들은 활동 과정에서 곤자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생회 활동이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배치되지 않고, 사생회의 대표들이 곤자가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학사장은 사생회를 해산할 수 없다.

3. 사생회 대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제학사 사생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4. 사생회 대표가 곤자가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퇴사나 추후입사금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 사생회 대표의 자격이 박탈된다.

⑧ (사생회의 해산 및 협력자 해임) 사생회의 해산 및 협력자 해임은 다음처럼 이루어진다. <개정 2019.12.03.>

1. 사생회 대표들은 스스로 사생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사생을 대상으로 해산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사생회 대표 2명 모두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생회는 자동 해산되며 학사장은 전체 사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3. 사생회 대표와 부대표의 활동이 국제학사의 규정과 운영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사장은 곤자가운영위원회, 사생회 협력자들, 학사조교로 구성된 협의체의 발의 후 전체 사생 50% 이상 투표 및 유효표 중 50% 이상 찬성을 통해 사생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9.12.03.>
4. 사생회 협력자의 직무 유지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곤자가운영위원회, 사생회 대표와 부대표, 학사조교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토대로 학사장이 해당 협력자를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03.>

제 50조 (커뮤니티 대표단) ① (구성과 혜택) 커뮤니티 대표단의 구성과 혜택은 국제학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활동) 커뮤니티 대표단은 국제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상호 유대감과 친밀함의 증진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준수사항) 커뮤니티 대표단의 활동은 곤자가의 운영원칙과 배치되어선 안 되며, 대표단의 구성원들은 활동 과정에서 곤자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장 생활수칙의 개정

제 51조 (수칙개정) ① 학사장은 생활수칙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활수칙은 곤자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후 시행된다.

③ 개정 후 시행된 생활수칙은 기숙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기숙사위원회는 국제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수칙의 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부 칙 (2018.12.26.)

이 생활수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8.)

이 생활수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07.)

이 생활수칙은 201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3.)

이 생활수칙은 201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7.)

이 생활수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7 . 01.)

이 생활수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 01.)

이 생활수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